

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0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2월 17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 각 호의 상환 방식만으로는 기 지원된 용자 상환 조건을 전부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지원금의 상환방식에 “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”을 추가함.  
(안 제9조제4항제4호 신설)

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수   정   안
<p>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4조에 따라 투자 · 용자지원을 받은 자 는 그 지원금을 상환 하여야 한다. <u>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 <p>--. <u>지원금 상환방식 은 지원 받은 자의 경 제적 사정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.</u></p> <p>1. <u>균등분할 상환</u> 2. <u>중도 일시 상환</u> 3. <u>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 <p>--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<u>그 밖에 시장이 정 하는 상환 방법</u>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4조에 따라 투자·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 지원금 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1. 균등분할 상환
  2. 중도 일시 상환
  3.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
  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4조에 따라 투자·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 <u>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. <u>지원금 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균등분할 상환</u></p> <p><u>2. 중도 일시 상환</u></p> <p><u>3.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